

문서번호	BSKS-3-1-28
제정일자	2006.01.24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1/4

2006.01.24.제정 2008.03.01.개정 2010.03.01.개정 2010.03.15.개정 2011.03.01.개정 2012.03.01.개정 2012.11.12.개정 2014.03.07.개정 2015.01.06.개정 2016.01.05.개정 2017.01.01.개정 2022.04.15.개정

소관부서 : 사무처

#### 제 1 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부산경상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 계약직직원(이하"직원"이라 한다)의 보수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본교 직원의 보수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- 1. "봉급"이라 함은 재직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.
  - 2. "보수"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.
  - 3. "보수의 일할 계산"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.
- 제4조(월 보수액) ① 계약직 직원의 보수는 다음과 같다.
  - 1. 사무보조원에 대한 보수는 업무의 난이도 및 채용예정자의 능력이나 경력에 따라서 별도로 정한다<개정 2012.11.12.>, <개정 2016.12.31.>.
    - 2. 노무원의 보수는 직종별 및 개인별 능력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<개정 2016.12. 31.>.
- 제5조(보수기준표 조정) <개정2012.11.12.>,<조 삭제 2016.12.31.>.
- 제6조(보수 지급일) ① 계약직직원에 대한 보수는 월급으로 하여 매월 25일에 지급한다.
  - ② 보수 지급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며,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총장이 그 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

문서번호	BSKS-3-1-28
제정일자	2006.01.24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2/4

- 제7조(보수의 계산) ① 보수의 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.
  - ②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
- 제8조(임시 계약직직원) 임시 계약직직원의 보수책정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며, 계약직직원의 보수액을 기준으로 하여 90%이하로 책정한다.
- 제9조(수습기간 중의 보수 지급) ① 수습기간중의 보수 지급은 다음과 같다.
  - 1. 사무보조원의 보수는 "계약직 사무보조원 임용예정자 운용지침"에 의한다.
  - 2. 노무원의 보수는 임용시 계약으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고등교육법 제14조 ① 항 개정(법률 제9356호)과 관련하여 2009년 2월 9일부터 '학장'을 '총장'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문서번호	BSKS-3-1-28
제정일자	2006.01.24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3/4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고등교육법 제18조 ②항 개정(2011.07.21.),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과-8845 (2011.11.17.)호에 의거하여 2011년 12월 1일부터 "부산경상대학"을 "부산경상대학교"로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("조교임용 및 보수규정"을 폐지하고 "계약직직원 인사규정"과 "계약직직원 보수규정"으로 변경 개정함)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문서번호	BSKS-3-1-28
제정일자	2006.01.24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4/4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2.04.15.)에 의하여 『학생산학취업처』를 『산학처』로 ,『기획처』를 『기획실』로,『입학홍보처』를 『입시홍보실』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